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손 희 준

청주대학교 교수

1. 서 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지방재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각종 대안이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개선대책이 주로 총량적 재정규모상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1991년 지방양여금의 신설과 2000년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¹⁾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의존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2005년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함께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²⁾ 등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 1983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13.27%에서 2000년부터 15.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교부율의 인상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인 공약이기도 하여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실질적인 교부율 인상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01년부터 교육재정에 대한 추가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연금 부담과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재원확충 효과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동시에 법정교부율이 15%에서 2004년 18.3%로 인상되었다가 2005년부터 다시 19.13%로 증가하였으나, 양여금의 폐지에 의한 도로사업분의 채원 반영과 증액교부금의 폐지 등에 의한 것이며, 2005년에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83%)'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2006년에는 분권교부세의 법정율이 0.94%로 인상되어 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인상되었다.

물론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견(異見)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빌미로 지방세의 신설 등과 같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보다는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조세체계 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하고 세원을 이양한다고 하여도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세제개혁과 세목교환 등에 있어 광역과 기초 간에 세수 및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각자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 동안 간헐적으로 지방교육세의 신설이나 주행세의 도입 등 지방세의 세원확대도 병행되어 왔으나, 그 도입배경을 보면, 교육재정의 확대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 세제개편을 수용한 결과 자동차세수의 격감 등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최근에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 거래세목의 세율을 인하한 점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조세체계가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목표를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으로 설정하여 지방은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초기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로드맵의 발표 때만 해도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재정분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지방이 크게 원하지 않았던 몇몇 재정통제수단만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 지방예산편성지침의 시달 폐지와 기채승인제도의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그 동안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등을 포함한 조세체계의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정치권에서 2005년 9월 김석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에는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상정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는 편이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의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상 등에 항의하여,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³⁾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강창일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그 내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의 도입방안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II.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논의와 지방재정 실태

1.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논의 배경

지방특별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4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초였다고 한다. 그 당시 재경부는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 2004년 8월 18일 관계부처 실무과장회의에서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세원 가운데 카지노 입장행위와 유흥음식점의 음식요금도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원으로 추가·이양하여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서울, 경기, 강원도가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반(T/F팀)을 구성하기도 하였다(유태현외, 2006: 71). 그러나 2005년 말에 와서 정부가 명확한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국세와 지방세체계의 개편논의를 중단하면서 더 이상의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에 관한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2월 6일 열린 우리당의 강창일 의원과 의원 10인이 함께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한 데,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와 유흥음식행위를 지방특별소비세로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내용 참조, 2006. 8. 8

2. 특별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국세인 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의 보완세로서 도입되었다. 부가가치세가 일반소비세로서 단일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한계소비성향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낮아진다면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이필우, 1994: 570). 도입당시 특별소비세는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및 입장세 등 서로 다른 세법 하에서 과세되던 소비세 항목들 중 일부 품목을 특별소비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으로 흡수 통합한 것이다.

현행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을 띠는 고가의 물품이나 특정장소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치성 소비재, 고가 내구성 소비재 및 소비억제대상 소비재 등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속성상 사치성 고가품이며, 입장행위의 대상이 되는 장소 역시 사치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의 세수 규모를 파악하면 <표 2>와 같다. 과세인원은 유흥음식행위와 관련된 7,161명이 가장 많고 이는 전체 과세 인원의 93.9%로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고가 소비재 및 레저용품에 대한 과세인원이 70명에 불과하고, 녹용 등에 대한 과세인원이 연간 24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세액규모를 보면 2004년 현재 총 3조 914억원인데, 이 중에서 승용자동차와 석유류 등에 과세한 금액인 약 2조 6,225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86.8%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가 특정세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특별소비세가 신설되면 과세대상이 될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의 입장행위와 카지노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액은 총 2,886억원 정도이다. 이는 특별소비세 전체 세수 규모의 약 9.3%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별소비세가 국세 및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면 <표 3>과 같은데, 2004년 실적기준으로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는 4조 5,749억원으로 앞의 통계와 비교할 때 1조 4,826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통계작성기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표 1〉 현행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품 목	세 율	품 목	세 율
〈제1호〉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 수렵용 총포류 ○ 녹용·로알제리·향수	20%(14%) " 7% (4.9%)	〈제4호〉 ○ 휘발유 ○ 경유 ○ 등유 ○ 중유 ○ 프로판(LPG) ○ 부탄(LPG) ○ 천연가스(LNG) ○ 부생연료유	630원/ℓ (535원/ℓ) 365원/ℓ (323원/ℓ) 178원/ℓ (154원/ℓ) 15원/ℓ 40원/kg 360원/kg (306원/kg) 40원/kg 130원/ℓ (112원/ℓ)
〈제2호〉 (기준금액) ○ 보석 (200만원) ○ 귀금속제품 (200만원) ○ 고급사진기 (200만원) ○ 고급시계 (200만원) ○ 고급모피 (200만원) ○ 고급용단 (200만원) ○ 고급가구 (500~800만원)	20%(14%) " " " " " "	〈과세장소〉 ○ 경마장 ○ 투전기장 ○ 골프장 ○ 카지노 - 폐광지역 카지노 ○ 경륜장	500원 10,000원 12,000원 50,000원 3,500원 200원
〈제3호〉 ○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 2000cc이하	10%(8%) 5%(4%)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 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주 1) 제4호 품목중 휘발유, 경유는 1994~2006년까지 교통세로 징수, 주 2) ()는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표 2〉 특별소비세의 세수현황(2004)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세 액
합 계	7,627	3,091,424
고가 소비재 및 레저용품	70	175,513
녹용 등	24	1,504
보석·귀금속류	201	3,392
승용자동차 및 석유류	27	2,622,458
입장행위	144	150,380
유흥음식장소	7,161	138,17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이러한 세수규모는 전체 국세수입에서는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세 수입

에서는 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입총계는 5조 1,339억원으로 추정되며 비중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다.

〈표 3〉 특별소비세의 비중 추이

세 목 별	2004년			2005년		
	실적	구 성 비		예산	구 성 비	
		국세	내국세		국세	내국세
국 세 계 (일 반 회 계)	1,177,957 (1,081,704)	100.0 (91.8)	- -	1,305,907 (1,250,060)	100.0 (95.7)	- -
1. 내 국 세 계 (일 반 회 계)	952,763 (926,809)	80.9 (78.7)	100.0 (97.3)	1,047,909 (1,018,532)	80.2 (78.0)	100.0 (97.2)
소 득 세	234,340	19.9	24.6	254,829	19.5	24.3
법 인 세	246,784	21.0	25.9	263,334	20.2	25.1
상 속 세	17,082	1.5	1.8	19,971	1.5	1.9
상 속 세	5,883	0.5	0.6	6,291	0.5	0.6
증 여 세	11,199	1.0	1.2	13,680	1.0	1.3
재 평 가 세	△137			-		
부가가치세	345,718	29.3	36.3	390,251	29.9	37.2
특별소비세	45,740	3.9	4.8	51,339	3.9	4.9
주 세	25,948	2.2	2.7	29,377	2.2	2.8
전 화 세	6	0.0	0.0	-	-	-
증권거래세	13,016	1.1	1.4	16,271	1.2	1.6
인 지 세	4,358	0.4	0.5	4,894	0.4	0.5
과년도수입	19,908	1.7	2.1	17,643	1.4	1.7
2. 교 통 세	100,652	8.5	10.6	114,929	8.8	11.0
3. 관 세	67,965	5.8	7.1	76,827	5.9	7.3
4. 방 위 세	571	0.0	0.1	-	-	-
5. 교 육 세	35,295	3.0	3.7	39,772	3.0	3.8
6. 농어촌특별세	20,711	1.8	2.2	26,470	2.0	2.5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5.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도입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사치품과 수입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효과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별소비세가 누진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한 과세대상 중에서 품목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수준이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고소득층만이 소비하게 되는 품목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세대상 품목간 세율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 선정이 소비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즉 특별소비세가 소비억제와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호화 사치재 및 과소비 조장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필우, 1994).

문제는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로 도입하였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완화되는가에 대한 측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실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중복될 것으로 판단된다(손희준, 2006; 이재은, 2003).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몇 가지 지표들만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9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56%대에 머물고 있다가 2006년에는 54.4%로 감소하였다.

〈표 4〉 재정자립도 추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립도(%)	63.5	62.2	63.0	63.4	59.6	59.4	57.6	54.6	56.2	56.3	56.2	54.4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순계),

자료: 행정자치부(2006).

물론 이러한 재정자립도로 지방재정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반론의 소지는 있다. 첫째, 지방재정자립도가 갖는 본질적인 지표로서의 한계와 둘째,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자립도가 낮은 것이나,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경우는 반드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역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급증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급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6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단체별로 파악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6년)

(단위: %)

사·도·별	평균 (순계기준)	특별시·광역시 (총계기준)	도 (총계기준)	시 (총계기준)	군 (총계기준)	자치구 (총계기준)
평 균	54.4	78.5	36.1	39.4	16.1	40.5
서울	94.3	93.3	-	-	-	53.1
부산	70.2	68.7	-	-	36.4	27.5
대구	70.7	70.6	-	-	30.2	28.8
인천	69.2	68.3	-	-	15.4	34.9
광주	57.5	54.1	-	-	-	22.7
대전	72.8	68.9	-	-	-	26.8
울산	65.7	60	-	-	50.5	36.2
경기	75.2	-	68.8	54.3	25.5	-
강원	26.7	-	21.8	25.8	15.1	-
충북	31.3	-	25.6	32.6	18.6	-
충남	35.3	-	29.4	34.7	19.1	-
전북	23.9	-	18	23.7	12.7	-
전남	20.2	-	13.6	29.4	11.1	-
경북	27.8	-	19.6	28.9	14.2	-
경남	38.8	-	31.4	38	15.3	-
제주	33.8	-	29.9	30.2	14.6	-

자료: 행정자치부(2006).

즉 예산총계규모로 서울시는 본청기준으로 9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은 78.5%인데 반해, 도는 36.1%이며, 시(77개 시)는 39.4%, 군(88개 군)은 16.1%, 자치구는 40.5%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평균 20%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0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12개 단체이며, 최저는 7.8%의 강진군이다.

둘째, 의존재원 중에서도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부족액을 충당하는 비율을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 충족율

(단위: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충 족 율	84.7	78.1	92.5	77.7	77.5	76.4	78.8	86.2	81.5

자료: 행정자치부, 매년도.

법정교부율이 2000년에 종전의 13.27%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그해 92.5%의 충당율을 보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80%에도 못 미치다가 2005년에 교부세의 법정율이 19.13%로 증가하자 다시 86.2% 증가하였다. 결국 보통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의 평균 81.5%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통교부세 충당율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수요라고 할 수 있는 자체 인건비의 충당율을 파악해 보면, 2006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51개 단체(20개 시, 72개 군, 59개 자치구)로 전체 250개의 60%나 해당되며,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42개 단체(3개 시, 31개 군, 8개 자치구)로 17%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추세인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열악성은 지방세의 구조가 세수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유형별 비중을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주요국의 지방세 수입구조(2003년 기준)

(단위: %)

유 형	국 가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 타
단일형	한 국		13.8	19.8	51.5	15.0
	일 본		45.2	21.6	32.2	1.0
	스웨덴		100.0	0.0	0.0	0.0
	프랑스		0.0	10.7	54.1	35.2
	영 국		0.0	0.0	100.0	0.0
	회원국평균		39.3	20.6	35.3	4.8
연방형	미 국	주	38.8	58.2	3.0	0.0
		지방	4.8	22.1	73.0	0.0
	호 주	주	14.5	63.1	22.4	0.0
		지방	0.0	0.0	100.0	0.0
	독 일	주	50.0	44.9	5.1	0.0
		지방	74.7	6.5	18.6	0.3
	캐나다	주	48.9	39.7	5.1	6.3
		지방	0.0	2.0	93.8	4.2
	회원국평균	주	76.9	46.2	12.2	4.0
		지방	64.0	12.8	56.7	4.8

자료: OECD(2005), 김현아(2005: 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지방세 수입구조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단일형 국가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모두 재산과세인 영국(100%) 다음으로 높고,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소득과세의 비중이 45.2%나 되며, 소비과세 역시 21.6%로 우리보다 높은 편이다.

연방형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기초자치단체 재산과세 비중이 각각 73%와 93%이며, 호주의 경우는 우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소득과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낮고, 단일형 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지방정부가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스웨덴은 지방정부 수입이 전액 소득과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또한 지방세의 지나친 재산과세 중심이 세수증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세체계와 재정구조 하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당연히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원이양의 우선순위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에 비해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세목의 도입이 워낙 그 반대가 거세고, 실제 도입을 위한 해결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손쉽게 도입이 가능하며, 저항이나 반대의견이 적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III.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안)의 내용검토

1. 의원발의 내용

2006년 2월 강창일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된 지방특별소비세 도입방안의 내용은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과세대상

(1) 지방특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에의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① 경마장·경륜장 또는 경정장

②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골프장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표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9홀인 골프장의 부지 기준면적 이하인 골프장

나. 대중골프장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다. 직장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골프장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③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 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 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2)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앞의 과세장소에 입장행위를 하는 자

(2) 앞의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

3) 납세지

지방특별소비세는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4) 과세표준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1)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인원
- (2)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5) 세율

- (1)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장행위

- 가. 경마장·경륜장·경정장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 나. 골프장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다. 카지노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②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표 8〉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요건

구 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입장행위	골프장	1인 1회 입장	1,200원
	경마장	"	500원
	경륜장	"	200원
	카지노	"	50,000원 (외국인: 2,000원, 폐광카지노: 3,500원)
유흥음식행위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기타 유사장소	유흥음식요금	10%

- (2) 또한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6) 단서

동시에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3857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2. 의원발의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1)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반대논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하여 국회 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제개정(안)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⁴⁾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반대논거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특별소비세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제안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중과함으로써 사치행위를 억제하는 사치세 기능에서 탈피하여 외부불경제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세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별소비의 일부 세원을 이양 받아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조치는 특별소비세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골프장, 경마장 등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골프장 등 과세장소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세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 반대논리에 대한 검토의견

이러한 반대논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유태현외, 2006).

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 4.

(1) 특별소비세 근간의 침해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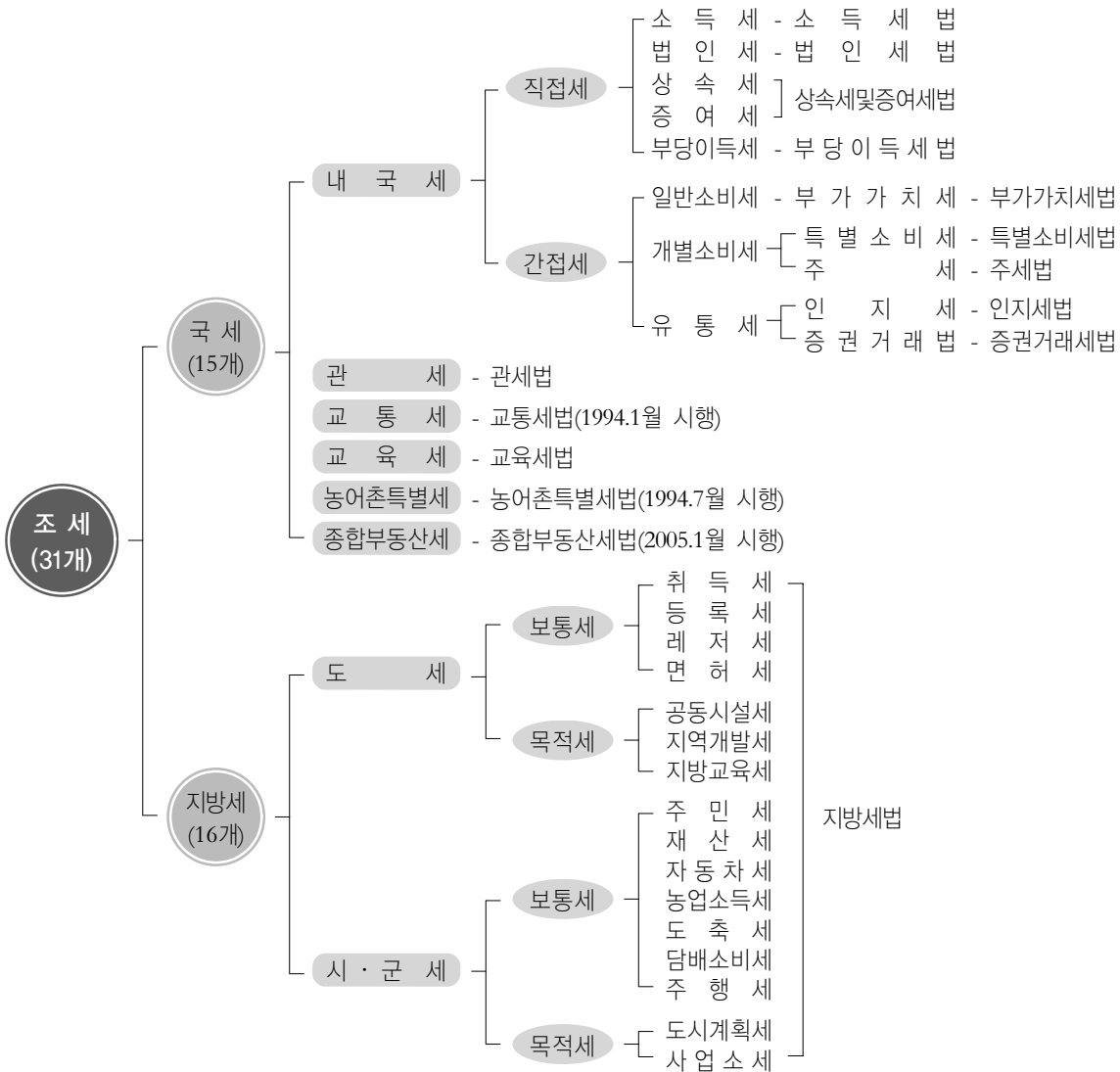
특별소비세가 사치재의 소비억제 기능에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치유하기 위한 교정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등을 볼 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외부불경제 즉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모색이 거의 없어 보이며, 환경오염 및 자연파괴, 집적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세원은 국세로 귀속되어 있다. 문제는 오히려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 귀속주체간의 괴리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당해 지역의 시설물에 의한 편익에 대한 과세권은 국가보다는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세원의 관리와 응익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제주도가 관광지의 기반시설과 관리·유지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과 위락지에 대한 입장료 등 특별소비세가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에는 별다른 세입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수한 부존자원과 관광자원 및 오염원 등에 의해 창출되는 세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곽채기, 2001).

(2) 지역격차의 심화문제

검토의견은 현재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재정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림 1]과 같이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특성을 파악해 볼 때, 국세의 어느 세목도 지방세로 이양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림 1] 현행 조세체계(2006년 현재)



왜냐하면 국세는 광범위한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소득과세와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 개별 소비세제 및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정책과세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을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세와 지방세는 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의 세목이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격차는 그 동안의 성장거점도시의 건설 등 잘못된 불균형 국토건설계획의 산물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신세원의 도입에 의해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문제는 이러한 격차를 여하히 보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즉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더욱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해 주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특별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통해 재정역량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의 동반자로 성장하게끔 하여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정격차 운운하면서 부족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심약하게 만들어 영원히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호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알팍한 집권화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력 차이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한다”는 억지논리와 다를 바 없다.

(3) 중복과세 및 징수효율성의 저하문제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과세되고, 세원관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나, 이미 국세인 특별소비세가 기 부과·징수되고 있으며, 문제는 징수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다는 것인데, 단순히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절차적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 등의 퇴폐 영업행위 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로 추가될 경우 세원의 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부과나 징수에 대한 구제와 과오납 환급 등의 세무행정상의 다소간 불편할 수 있으나,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목적에 비하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V.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과 쟁점

1. 도입필요성 및 전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목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

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만 동의한다면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이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력이 좋은 몇몇 자치단체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재정이 더욱 취약한 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이는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주체 등의 재설계에 의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물론 현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해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표 9>와 같이 세원의 편재현상이 매우 심하다.

〈표 9〉 관광숙박시설 및 골프장 분포

구 분	관광숙박업		골 프 장	
	개 소	비 중	개 소	비 중
합 계	698	100.0	194	100.0
서 울	114	16.3	2	1.0
부 산	64	9.2	3	1.5
대 구	29	4.2	2	1.0
인 천	33	4.7	3	1.5
광 주	20	2.9	-	-
대 전	26	3.7	2	1.0
울 산	6	0.9	2	1.0
경 기	75	10.7	96	49.5
강 원	78	11.2	20	10.3
충 북	31	4.4	10	5.2
충 남	19	2.7	6	3.1
전 북	22	3.2	4	2.1
전 남	28	4.0	8	4.1
경 북	57	8.2	10	5.2
경 남	30	4.3	8	4.1
제 주	66	9.5	18	9.3

예를 들어 관광숙박업의 경우는 총 698개소 중에서 서울, 강원, 경기, 제주 등 4개 지역에 56.9%가 집중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는 총 194개소 중에서 용인과 이천 등 경기도에 96개가 밀집되어 전체의 49.5%가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치면 총 79.1%가 3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세수 역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2005년도 부과기준으로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원분포를 파악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특별소비세의 세원분포 정도('05년 부과기준)

(단위 : 백만원, %)

과세대상	수 도 권				비수도권	전국합계
	서 울	인 천	경 기	소 계		
경 마 장	-	-	1,352 (86.3)	1,352 (86.3)	215(제주) (13.7)	1,567 (100.0)
경 료 장	157 (52.9)	-	-	157 (52.9)	140(경남) (47.1)	297 (100.0)
카 지 노	-	-	-	-	6,512(강원) (100.0)	6,512 (100.0)
골 프 장	0 (0.0)	2,834 (1.9)	82,806 (54.4)	85,640 (56.3)	66,473 (43.7)	152,113 (100.0)
유흥주점	55,070 (39.1)	6,172 (4.4)	25,857 (18.3)	87,099 (61.8)	53,834 (38.2)	140,933 (100.0)
합 계	55,227 (18.3)	9,006 (3.0)	110,015 (36.5)	174,248 (57.8)	127,174 (42.2)	301,422 (100.0)

자료: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http://www.assembly.go.kr/index.jsp>)

총계는 3,014억 2,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세수의 57.8%인 1,742억 4,800만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이보다 적은 1,271억 7,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대상별로 파악하면 경마장은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에만 있어, 경기도의 수입이 전체의 86.3%인 13억 5,200만원이며 제주도가 2억 1,500만원이고, 경료장의 경우는 경남 창원과 서울로 서울이 1억 5,700만원이며 경남이 1억 4,000만원으로 엇비슷하다. 카지노의 경우는 강원랜드 한 곳으로 세수가 65억 1,200만원이며, 골프장의 경우는 경기도가 전체 수입의 54.4%인 828억원이며, 비수도권이 43.7%인 664억 7,300만원이다. 유흥주점의 경우는 서울이 550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258억 5,700만원으로 18.3% 등 수도권이 전체의 61.8%인 반면, 비수도권지역은 538억 3,400만원으로 38.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세원이 편재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다시 이를 재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원칙에 충실하여 징세지에서 세입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

제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지방특별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세로 징수하여 징수교부금과 잔여 세수를 자치단체간 역재정력지수와 인구비중 및 징세지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유태현, 2006).

그러나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가 2005년 3,014억원 규모이고,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세수는 징세지에 귀속시키고, 과세대상을 현행 지역개발세와 레저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세수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추가하여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등 근본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의 대체수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세체계가 단순히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에 의한 결과물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주체

지방특별소비세의 부과·징수 등 과세주체를 어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이다.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으로 시·도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에서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도세로 할 경우 결국 기초자치단체나 지방간의 재정력 지수와 몇몇 지표 등을 감안하여 세수를 재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며, 결국 조세라기보다는 재원의 배분적 성격으로 인해, 세원이양보다는 지방교부세로의 재원배분이 훨씬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특별소비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의 외부효과 발생문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로 할 경우 지나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으로 인해 골프장과 경마장 또는 카지노 등의 시설이 난립할 여지 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세수를 직접 재배분하기 보다는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

조정제도를 강화하여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세원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지방특별소비세의 독립세목화

기존에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및 성격에 대해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이재은, 2005, 유태현·한재명, 2006).

즉 <표 11>과 같이 지방특별소비세를 독립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레저세 세원으로 편입하거나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통합하여 신설할 것인지, 또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포함하여 지역개발세 세원으로 편입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표 11>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성격구분

구 분		장 점	단 점
방안1	지방특별소비세 세목 신설	소비세의 성격 반영 용이	지방세 세목 증가 (현재 16개→17개)
방안2	레저세 세원으로 편입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세수확충 가능	경마·경륜의 경우는 세원의 중복·이원화 과세
방안3	지역개발세 세원으로 편입	지역경제 활성화 조정재원으로 활용 용이	소비세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자료: 유태현·한재명(2006:115) 재인용.

2안인 레저세 세원으로 편입할 경우 이양하는 경마장과 경륜장의 입장행위와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마·경륜이 같은 세목내의 세원이 되어 중복과세 또는 세무행정의 2원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총액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목 내에서 입장행위와 승자·승마투표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3안인 지역개발세 세원으로 편입할 경우, 소비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지방특별소비세를 지역개발세에 편입할 경우는 목적재원이 의도하는 이익과 부담의 연계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 소비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통일성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방세의 세목이 증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목으로 도입하는 1안이 소비세의 성격에도 부합하고 가장 단순할 수 있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특별소비세의 세목화와 함께 과세대상의 확대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대상에다가 기존의 도축세와 면허세의 일부 과세대상을 포함시키고, 그 동안 법정외세의 과세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관광세와 입탕세 등의 과세대상을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열거주의를 채택하되, 각 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지방의회가 이러한 과세대상 중에서 선택적으로 골라 과세하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⁵⁾

결국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범위 및 성격 등도 지방특별소비세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세 체계와 국세체계의 구분 등 큰 조세개혁 수준에서 재검토되고 설정되어야 한다.

V. 결 론

그 동안 재정분권화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가장 현실성이 있어 왔던 방안이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이었다. 그러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검토되어 온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별반 진전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그 동안 그토록 반대를 거듭해 왔던 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할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할지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워낙 조세와 재정은 정치와 권력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하여, 국민소득 20,000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정부가 협력과 경쟁의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치를 이룩하자는 것이 현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보면, 지금까지의 조세개혁과 재정분권화 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의

5) 이러한 견해는 지방세의 소비과세를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로의 담배소비세로 설정하자는 이재은교수의 제안(2005)과 일치할 수 있다.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대안보다는 보통교부세라는 의존재원을 통한 재정보전 정책은 지방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자세와 행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작금에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지방특별소비세법(안)이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인 재정동원수단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동시에 지방특별소비세의 성격 및 과세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광채기(2001).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통권55호
- 김현아(2005). “지방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제6호.
- 유태현(2006).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소비세원 확충방안」 토론회 논문집.
- 유태현·한재명(2006).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간 세수균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유태현·정지선·최천규·한재명·김현숙(2006). 「지방특별소비세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필우(1994). 조세론, 법문사.
- 손희준(2006).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재은(2005),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세미나 발표 논문.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도 뉴스레터」. 2006. vol.2.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연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OECD(2005), Revenue Statistics.
- <http://www.assembly.go.kr>
- <http://www.mogaha.go.kr>
- <http://www.mpb.go.kr>